

부록 6-나-3

독립전문가

제1절

독립전문가

1. 독립전문가란 공급되는 서비스 관련 적절한 교육 및 그 밖의 자격을 갖추고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으로부터 서비스 공급 계약을 취득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 및 일시 체류하며 계약된 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를 말한다.
2. 독립전문가는 1년 또는 계약기간 중 더 짧은 기간까지의 체류기간이 최대 허용될 것이다. 체류기간은 각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을 조건으로 연장될 수 있다.
3. 독립전문가의 체류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경제적 수요심사를 적용하거나 수적 제한을 수립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후원 계약과 관련된 불법이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독립전문가의 입국 및 체류를 한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불법이민의 경우, 양 당사국은 각각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을 고려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한다.
5. 적용 가능한 경우,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독립전문가에게 부과될 수 있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부과는 이 협정에 따른 약속의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제2절

독립전문가를 위한 일시 입국의 허용

각 당사국은, 부록 6-나-4에 규정된 직업에서 독립전문가 또는 후원을 받는 전문가로서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가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고 다음을 제출하는 경우, 그 자연인에게 최초 1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의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 국적의 증명

나. 독립전문가가 활동에 종사할 것임을 입증하고 주재국에서 자연인의 서비스를 고용한 기관으로부터의 계약서를 포함하여 입국의 목적을 기술하는 문서, 그리고

다. 관련된 최소한의 교육 요건 또는 대체 자격의 취득을 입증하는 서류